

장애인 등록 절차

STEP 01 | 장애진단



주치의와 상의하여
의료기관에서
장애정도심사용
진단서 및
구비서류를 발급



STEP 02 | 장애인등록 신청



신청인이 장애정도
심사용 진단서 및
구비서류를 읍면동
주민센터에 제출



STEP 03 | 장애심사 요청



국민연금공단에서
장애정도심사 실시
(의학자문의의를 통해
장애정도 결정)



STEP 04 | 장애심사 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



국민연금공단에서
읍·면·동으로
장애정도심사 결과 통보
장애정도심사 결과 반영하여
장애인등록 및 통지

장애정도심사 결과 불복시 이의신청(공단), 행정심판(지자체)

취장장애 등록 후 이용가능 서비스

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
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(종합조사 경유), 장애수당 (소득기준 충족 필요), 장애인의료비 지원(소득기준 충족 필요),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
- * 다만 취장장애인의 경우,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장애인 경우 수급 가능, 장애인주차표지 및 콜택시 이용 대상 아님("보행상 장애"에 해당하지 않음)

요금 감면 등 서비스

- (공과금 등 감면) 건강보험료, 전기요금, 도시가스요금, 이동통신요금, 유선통신요금, 고속도로 통행료, 철도·지하철 요금, 국공립 공원 등 입장료
- (세제 혜택) 소득공제(연말정산), 자동차취득세, 속세·증여세 등 감면
- (우선권 등 인정) 공공주택 특별분양, 어린이집 우선 입소(자녀·형제자매), 대학입시 장애인전형, 장애인 일자리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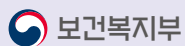
심사용진단서 작성예시



취장장애 관련 Q&A

2026년 7월 1일

취장장애 등록이 시행됩니다.



국번없이 129



국번없이 1355



kakao ^{카카오} ^{채널} ^이



췌장장애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?

췌장의 만성적인 **중증 내분비기능 이상**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.
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아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1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 (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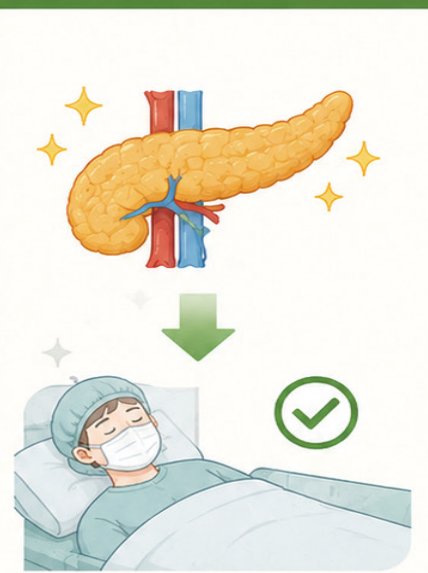
- 6개월 이상**
다회인슐린주사요법
또는
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

- 혈액내 포도당 농도 140mg/dL 이상**
정맥혈 채취 후
혈액검사로 확인 **140 mg/dL 이상**

- 다음 중 하나에 해당
 - (1) C-peptide **0.6 ng/mL 미만**

 - 또는
 - (2) 단회뇨 C-peptide/Creatinine ratio **0.2 nmol/mmol 미만**


2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



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
관련 진료기록 및
확인서류로 신청 가능

핵심 정리

-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음
-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 필요
- 혈당 조절이 어려움
- 검사에서 췌장 기능 저하 확인
- 췌장 이식을 받음

단순 당뇨병이 아니라 **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**인지가 중요합니다.

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췌장장애 등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세요

0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

***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가능한 진단의사**

- 1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,
- 2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또는 소아청소년과(내분비분과) 전문의

✓ 췌장이식을 시술했거나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

02 진료기록지 (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)

- ✓ 최근 6개월 이상 인슐린치료 (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사용, 인슐린 용량, 주기 등)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
 - * 진단명, 주증상, 병력, 치료내역,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에 대한 기재 필요
- ✓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
 - * 진료기록지, 검사기록지 제출 불필요.
 - 다만,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이 심한 장애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, 위 검사 및 진료기록지 제출 필요

03 검사자료

- ✓ 비공복 혈액(혈장, 혈청) 포도당 검사 결과지: **140mg/dL 이상**
- ✓ C-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-펩타이드/크레아티닌 검사 결과지

*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검사자료 제출 (3개월 내 실시한 경우 2차 검사 불인정)하고 2회 모두 진단기준 충족

선택자료

- ✓ 원칙적으로 항체검사 결과지는 불필요. 다만 기존의 자가항체 검사 결과(2종 이상 양성)가 있는 경우 제출 가능
- * 자가항체 예시: GAD항체, IA-2항체, ZnT8항체, ICA항체 등

췌장장애 인정기준

심한 장애인
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/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된 (1)C-peptide가 0.6ng/ml미만 또는 (2)단회뇨 C-peptide/creatinine ratio가 0.2nmol/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,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)

심하지 않은 장애인
췌장을 이식받은 사람